

# 국 ·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거 2015년도 1/4분기 국가암검진사업을 위한 국비(국민건강증진기금) ·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· 결정 통지하오니 아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보조사업명** : 국가암검진사업

**나. 보조금 교부대상**

- 시설명(단체명) : 종로구보건소 등 25개 자치구보건소
- 대표자 :
- 주소 :

**다. 교부결정액** : 금1,724,294,000원(금일십칠억이천사백이십구만사천원)  
(자치구별 내역 별첨)

**라. 보조금 교부조건** : 따로붙임

2015. 2. .

서울특별시장

# 국·시비보조금 교부조건

1.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,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, 보조금 교부 중지,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 -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
  -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
  -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
  -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
2. 보조사업의 신고 의무  
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- 사업을 폐지한 때
  -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
  -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
3. 용도 외 사용금지  
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만약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함.
4. 사업의 내용변경 등  
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5. 실적보고
  -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익년도 2월말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고,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.
  - 보조금은 일반회계 또는 자체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하고, 보조금을 원본으로 한 이자 발생액은 당해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, 사용되지 아니한 이자 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.
  - 기타 관련 법령 및 교부자가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